고객위험평가 지침서

개정 이력

일자	내 용	작성자	승인자
2024.01.01	• 개정	김작성	이승인

Contents

I. 위험평가 개요

- 1. 위험평가 관련 업무규정 요건
- 2. 위험평가 체계
- 3. 위험평가 대상
- 4. 위험평가 등급
- 5. 위험평가 등급 조정
- 6. 위험평가 모델 개요
- 7. 위험평가 절차
- 8. 위험평가 산**출 Logic**

Ⅱ. 위험평가 항목

- 1. 위험평가 항목 개요
- 2. 국가위험
- 3. 고객위험
- 4.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5. 채널 위험
- 6. 거래 위험
- 7. 과거이력 위험

업무규정 요건

업무규정 따라 고객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관련 규정: KoFIU 업무규정 제28조 (위험평가)

-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국가위험
 - 2. 고객유형
 -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한다.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검사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해야 한다.

관련 규정: KoFIU 업무규정 제29조 (국가위험)

- ① 금융회사등은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한다.
-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 5. 국제투명성기구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업무규정 요건

업무규정 따라 고객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관련 규정: KoFIU 업무규정 제30조 (고객유형 평가)

-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 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3. 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제8조의4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도 이와 동일하다)
 -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7. 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 8.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관련 규정: KoFIU 업무규정 제31조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함' 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 1.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 2. 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 2. 환거래 서비스
 - 3. 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지속적인 고객 위험 평가

위험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각 요소에 대해서 안정성, 적정성, 효과성이 유지·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합니다.

- 고객위험평가는 고객확인 제도에 속한 업무입니다.
- 고객확인은 신규가입시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고객확인 업무의 부속 업무인 고객위험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객위험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단위 위험요소들이 회사의 사업 환경에 적절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의 발전,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적 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위험 요소 자체도 변경될 수 있고, 위험 요소별 설정 값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합리적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고객위험평가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보고책임자는 위험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위험 요소에 대하여 적정성을 최소 1회/년 실시합니다.

위험평가 체계

고객위험평가체계는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 등의 위험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후 그 결과값에 맞게 그 결과에 따라 위험 등급(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을 정하기 위한 체계이다.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위험 등급에 따라 적절한 고객 신원 확인 및 검증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평가 체계 정의						
위험범주	대상 구분	상품 및 서비스	채널위험	거래위험	과거이력위험		
	자금세탁 의심 직업 및 업종	기업 상품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거래채널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거래 금액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최근 2년 STR Alert 건수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정치적 주요 인물 고객실체	서비스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최근 2년 STR 보고가		
					있는경우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위험요소	고액자산가 여부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가상자산취급여부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위험평가 대상

고객위험평가는 대상은 고객확인의무 대상과 동일합니다.고객위험평가는 고객확인의무의 부속 단위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위험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표자, 실제소유자 등은 이름, 국적,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므로, 해당 항목을 국가위험 및 고객유형에 적용하여 위험평가를 이행합니다.

대상 구분	대상 Entity	고객유형	상품 위험	서비스 위험	채널 위험 등
개인	거래 당사자 (자연인 본인)	Entity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하는	개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하는	개인이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려고하는
	실제 소유자*	각 Entity별 위험평가실시	상품의 위험 적용	서비스의 위험 적용	채널의 위험 적용
기타	지급/정산 시 제3자	제3자로 부터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는 위험요소(Risk Factor)별 위험		별 위험평가를 이행	
기나	고객의 관계인	관계인으로부E	서 수집에 해당하는 위험	범요소(Risk Factor)별	위험평가를 이행

^{*} 개인의 실제소유자는 (1) (고객확인 업무담당자가 보았을 때) 거래당사자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2)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합니다.

위험평가 이행 시기

고객위험평가는 고객확인의 부속 업무이므로 고객확인 이행 시기에 고객위험평가 또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상 고객	시기	처리 방법
신규 고객	• 계좌의 신규 개설 시	건 별 실시간 처리
기존 고객	 고객확인 정보 불일치의 경우 고객의 주요 정보(성명, 실명번호, 국적 등)의 변경을 알게 되었을 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건 별 실시간 처리
	•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시	건 별 실시간 처리
	•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시	일괄 처리(Batch)
	•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건 별 실시간 처리

위험평가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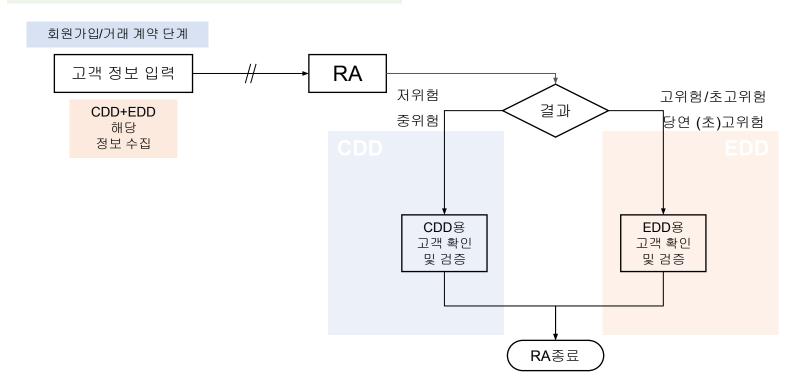
위험 평가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ПВ бИН ОНС ИВИ ЕНИИ. 					
구분 방법	위험 등급 명	수집 항목	RA 결과 점수 또는 해당 고객		
	저위험	CDD	0 ~ 25		
위험평가 결과 점수로	중위험	CDD	26 ~ 50		
구분	고위험	CDD+EDD	50 ~ 75		
	초고위험	CDD+EDD	76 ~ 100		
KoFIU 업무 규정 또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 등으로 구분	당연 고위험	CDD+EDD	FIU 업무 규정 제30조제3항 따른 고객 1. 금융회사등으로부터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제8조의4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 고시하는 자"도 이와 동일하다) 4.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5.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6.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7.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8.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FIU 업무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당연 초고위험	CDD+EDD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절차

고객위험평가 업무 이행 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습니다.

비대면 거래



위험평가 등급 조정 - 결과 계승 (위험등급 상향)

대상 Entity간 위험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는 높은 위험 단계를 적용합니다.

대상 구분	대상 Entity	위험평가 중간 결과*	위험평가 최종 결과*	위험평가 중간 결과*	위험평가 최종 결과*	위험평가 중간 결과*	위험평가 최종 결과*
개인	거래 당사자 (본인)	저위험		저위험 	고위험		
	실제 소유자			고위험			
기타	지급/정산 시 제 3 자	저위험					
	고객의 관계인	저위험					

^{*}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는 위험 등급 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위험평가(RA)를 두 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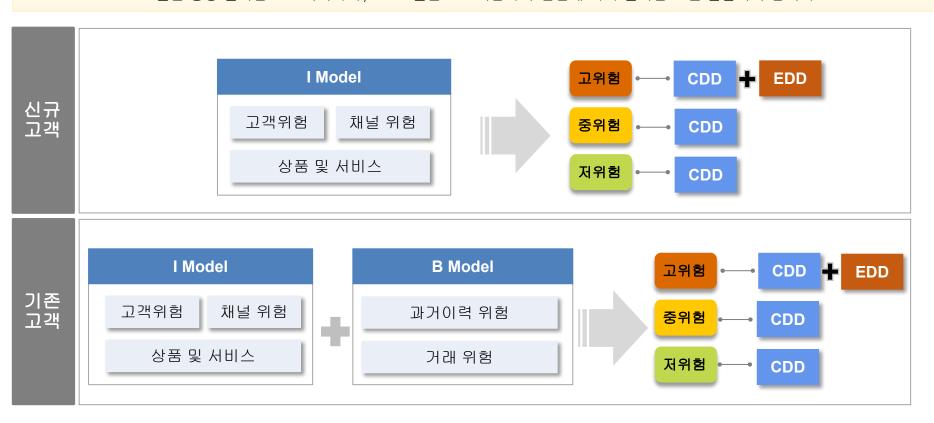
위험평가 모델 개요 (1/2)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Initial 모델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Behavior 모델을 이용합니다. 당연 (초)고위험 기존 고객은 B모델 위험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고위험으로 적용합니다. 당연고위험 고객이외 다른 기존 고객들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분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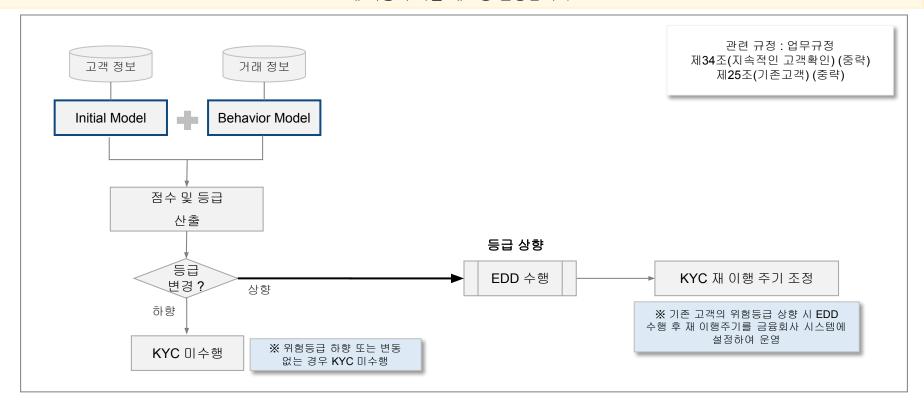
위험평가 모델 개요 (2/2)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Initial 모델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Behavior 모델을 이용합니다. I 모델은 통상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I+B 모델은 보고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간 또는 일괄처리 합니다.



위험평가 모델 개요 - 위험등급 상향 절차 및 조치

위험등급 변경은 기존 고객에 대해 <mark>정기 월 배치</mark>로 I+B Model을 수행하여 위험점수 및 위험등급을 산출합니다. 위험등급 상향 시, 금융회사 업무시스템으로 상향된 위험등급을 전송하는 절차로 상향 즉시 EDD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 이행 주기를 재조정 운영합니다.



고객 위험평가 절차

고객 위험평가의 세부 절차 및 WLF와의 연계 절차는 다음 흐름도와 같습니다.

고객 위험평가 프로세스 WLF 프로세스 요청 **Initial Model** I No 고위험 KYC 시작 고객 위험 상품 위험 채널 위험 Yes Yes WLF 수행 가중치에 가상자산 신규 따른 시작 사업자 List 당연 고위험 고객 위험등급 산출 PEP? No Yes Yes 과거이력 위험 고위험 Initial Model 거래 위험 No 동일인? Yes **Behavior Model** 승인

고객 위험평가 절차 - 수행 주기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는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절차와 기존 고객 대상으로 월 배치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



고객 위험평가 산출 Logic

신규 고객에게는 I모델을, 기존 고객에게는 I+B모델을 적용합니다. I모델과 B모델의 위험평가 점수 산출 로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요소별 위험점수 X 위험요소별 가중치

- * I 모델 = Initial 모델
- ** B 모델 = Behavior 모델

l 모델

위험 요소	위험 점수
직업	16.5
고객실체	33.3
채널	60

위험 가중치 직업 28.3 23.3 고객실체 채널 13.4 백분율 기준

위험



위험 환산 요소 점수 과거이력 17.400 거래금액 1 0.630

SUM(위험요소

최종 위험평가 결과 총 환산점수 위험등급 저위험 23.802

별 환산점수)

총 환산점수 가중치에 따른 위험등급 산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 위험요소의 위험등급이 고위험이면 총 환산점수와 관계없이 당연 고위험으로 산출되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이행

CDD **EDD**

위험도

В 모델 **

위험 위험 요소 점수 과거이력 100 거래금액 5

과거이력 17.4 거래금액 12.6 백분율 기준

Ⅰ모델 총 환산점수 = (국적 점수 * 가중치) + (고객실체 점수 * 가중치) + (직업(업종) 점수 * 가중치) + (상품점수 * 가중치) + (채널점수 * 가중치)

B 모델 총 환산점수 = (거래금액 점수 * 가중치) + (과거이력 점수 * 가중치)

Contents

I. 위험평가 개요

- 1. 위험평가 관련 업무규정 요건
- 2. 위험평가 체계
- 3. 위험평가 대상
- 4. 위험평가 등급
- 5. 위험평가 등급 조정
- 6. 위험평가 모델 개요
- 7. 위험평가 절차
- 8. 위험평가 산출 Logic

Ⅱ. 위험평가 항목

- 1. 위험평가 항목 개요
- 2. 고객위험
-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4. 채널 위험
- 5. 거래 위험
- 6. 과거이력 위험

위험평가 항목 개요 - 요소별 가중치

신규 고객은 I Model(Initial Model)의 위험요소 가중치를 적용하며, 기존 고객은 I+B Model(Behavior Model)의 위험요소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점수를 산출합니다..

			요소	가중치
위험 모델	위험 요소	요소 가중치	신규고객 (I모델)	기존고객 (I+B모델)
			개인	개인
	고객실체	27.30 %	23.30 %	16.31 %
Initial	직업	32.30 %	28.30 %	19.81 %
모델	업종	32.30 %		
(I+B모델	상품	19.00 %	15.00 %	10.50 %
일 때 70%	채널	17.40 %	13.40 %	9.38 %
적용)	부분 비중			70%
	합계	100 %	100 %	
	거래금액	42.00 %		12.60 %
Behavior 모델	과거이력	58.00 %		17.40 %
(30%)	부분 비중			30%
	합계	100 %		100 %

위험평가 항목 개요 - 당연 고위험 정의 및 대상자

특금법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고객군은 위험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되는 고객을 "당연 고위험" 고객이라고 합니다. 거래수용절차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을 이행합니다.

당연 고위험 고객 : 규정 등에 의한 고위험 고객

-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 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이용 고객
- 환거래 서비스 이용 고객

위험평가 항목 개요 - 주요 위험 요소

주요 위험 요소별 대상 고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험 요소	고객 구분	위험명세	설명
고위험 직업	개인	• 자금세탁 의심 직업	카지노 관련 종사자, 대부업자, 귀금속 판매인, 환전상, 가상자산사업 관련 종사자
STR 보고이력	개인	• STR 보고이력	최근 2년 STR 보고가 있는 고객
가상자산취급 자 여부	개인	• 가상자산취급자 여부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취급자
고액자산가 여부	개인	• 고액자산가 여부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규정명		규정 내용
한국 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 지에 관한 업무규정 (2019)	○ 제30조(고객유형 평가) ①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가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중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돌)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도 이와 동일하다)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금융위원회가 공중합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7. 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8.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2018)	▷ 제2절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① (고객확인 강화)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취급업소에 대해 업무규정이 열거한 추가적 확인사항(업무규정제 42조 제2항, 3항)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할 고객 대상인 '대량의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등'에 취급업소를 포함 (업무규정 제 30조 제3항 제4호)

규정명		규정 내용
미국 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 미연방금융회사검사위원회)	FFIEC BSA Manual (2021)	● 정치적 주요인물(외국 정부의 행정, 법무, 국무, 국방 기타 사법기관에 몸담고 있는 고위 관리,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 관리, 외국 국명기업의 경명자) - 정치적 주요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나 사업체 - 정치적 주요 인물의 직계가족, 정치적 주요 인물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지인 • 비은행 금융기관 - 카지노와 유사업홈 - 증권, 상품(Commodity) 회사 (중개인, 달러, 투자자문, 유추얼펀드, 헷지펀드, 상품거래인) - 현금서비스 제공자 (환전, 수표, 현금, 우편환, 선불카드 등의 발행, 판매자) - 기타 금융기관 (값비싼 금숙, 원석, 보석 판매인, 전당포, 대출 회사) • 전문서비스 제공 업체 - 고객과 은행(금융기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므로 자금세탁, 신분위장용 제3자 거래의 위험 • 번호사, 회계사, 투자 중개인, 기타 고객에 대한 금융관계를 연결하는 제3자 • 비정부기가와 자선단체 - 대규모 지역, 국가, 기타 국제 자선단체 - 커뮤니티 중심의 자립그룹 - 리서치 가관, 교회, 전문가 연합, 로비 그룹 등 - 특정 비자격 사업체 - 금융기관이나 어떤 유형이든지 금융기관의 대행 - 선박, 비행기, 동강설비, 이동 가능한 간이주택 등과 같은 어떤 종류든지 운송수단을 판매 또는 구입 - 법, 회계, 의학 관련 서비스 - 상품의 경매 - 선박, 비선, 비행기를 전세 또는 운영 - 전당포 운영 - 하가를 받은 경마를 제외한 도박 관련 서비스 - 투자 자문 서비스나 투자 금융 관련 서비스 - 부동산 중계소 운영 - 부동산 중계소 운영 - 부동산 중계소 운영 - 보통신 공계소 무용 - 미국 내 셀 회사 -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 현금집중사업 - 편의점, 식당, 소매상점, 주류 판매점, 당배 소매점, 개인 소유의 자동 입출금기 자판기 운영자, 주차장 운영자

규정당	명	규정 내용
영국 JMLSG (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 : 영국 자금세탁방지기구)	JMLSG Guidance (2020)	• 실질적 수혜자를 은닉하기 쉬운 복잡한 소유권 구조를 가진 법인 • 흔치않은 상황에서 설정된 사업 관계 • 비거주자 • 개인자산운영사 소속 법적 대리인 등 • 명의주식보유자 (nominee shareholders; 명의주식보유자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또는 무기명주식보유자를 가진 법인 • PEP • 거액의 현금성 거래가 많은 사업 • 높은 수준의 부패 (건설, 제약 및 건강관리, 무기 무역 및 방위산업, 채굴(Extractive Industry) 및 공공조달)와 관련되어 있는 고객 • 금융서비스업, 카지노, 귀금속상 •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의 테러확산 관련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고객 • 신탁회사 및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국제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Recommendations (2022)	• 비영리단체 • 정치적 주요인물(PEP) • 카지노 • 부동산 중개인 • 귀금속상 •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 전문직 및 회계사 • 신탁 및 회사설립전문가 • 비거주자 • 개인자산보유회사 •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현금 집중 사업 • 소유구조가 복잡한 법인

규정명		규정 내용	
캐나다 FINTRAC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 캐나다의 금융 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	Guidance on the Risk-Based Approach to Combat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21)	●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 고객이 영위하는 사업이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현금 거래를 발생시킨고객 실질계좌소유주를 은닉하기 위한 중간다리 또는 중개 서비스 제공 전문가 고객 (CPA, 변호사 등) 적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제재를 받지 않는 충간 기관과 거래하는 고객 신분확인이 대면(face-to-face)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고객 (비대면 신분확인) 캐나다 국외 거주 고객 국외 업체와 거래하는 고객 응록되지 않은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 목적 기구(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인 고객 고객이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객 의심스러운 거래 및 관련 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고객 고객의 프로필을 고려하였을 때 비합리적인 거액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혹은 거액의 거래(transaction)를 발생시키는 고객 계정활동이 고객의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는 고객 국내법, 규제 등에 대한 과도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객 건국고객 영위하는 사업에 비해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 온라인 겜블링 사업 운영 고객 고객이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관계 등이 실질적 계좌주 등을 밝혀내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는 고객 (고객이 범인 또는 여타 기업고객일 경우) 고객계좌의 실질 소유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고객 근행 어음 및 신용장을 사용하는 고객 구래은행과의 거리가 비합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고객 ゔ래전인 이유 없이 다양한 지역 혹은 각기 다른 다수의 기관들로부터 빈번한 자금이체 등이 이루어지는 고객 등록되지 않은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고객 등록되지 않은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고객 등록되지 않은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고객	

고객위험 - 고객 실체

고객의 연령, 거주여부를 식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수행합니다.

개인				
No.	위험 요소			
1	내국인 – 거주자 (성인)			
2	내국인 – 거주자 (미성년자)			
3	내국인 – 비거주자			

고객위험 - 직업/업종 (저위험군)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고객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저위험 고객군 (FIU업무규정 제30조 제2항)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 (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고객위험 - 직업/업종 (고위험군)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고객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저위험 고객군 (FIU업무규정 제30조 제2항)

- 1.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3. 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도 이와 동일하다)
-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7. 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 ·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 (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 제1989호 (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 (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 8.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고객위험 - 직업/업종 (고위험군)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고객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해당하는 직업의 위험점수로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합니다.

고위험 직업군						
대량의 현금거래 관련 직업	고가의 위험상품 관련 직업					
현금 집중거래 사업자	전문서비스 제공 직업					
불확실한 소득원천 관련 직업	높은 부패 수준 관련 업종					
가상자산 관련 종사자						



고객위험 - 직업/업종 위험 상세 (1/2)

위험요소	위험명세	설명	Reference
	전문서비스 제공 업종	법무 관련 서비스/ 회계 관련 서비스/ 세무 관련 서비스/ 의료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미국 FFIEC영국 JMLSG캐나다 FINTRAC국제 FATF
	대량의 현금거래 수반 업종	대부업 / 카지노 / 환전영업 / 소액해외송금업	• KoFIU • 미국 FFIEC
	고가의 위험상품 관련 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판매업 / 상품 중개 및 경매업 / 증권 중개업 / 전당포	• KoFIU • 미국 FFIEC
자금세탁 의심 직업 및 업종	현금 집중 사업	편의점 / 음식점 / 소매상 / 주류 도매상 / 자동 판매기 운영업 / 주차장 운영업 / 숙박업	미국 FFIEC영국 JMLSG캐나다 FINTRAC국제 FATF
	높은 부패 수준 관련 업종	건설업 / 의약품 제조 / 채굴업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영국 JMLSG
	비영리 및 종교 관련 업종	비영리단체 / 종교단체 / 자선단체	미국 FFIEC영국 JMLSG캐나다 FINTRAC국제 FATF
	운송수단 판매/구매 및 임대 관련 업종	운송수단 판매업 / 운송수단 운송업 / 운송수단 임대업	• 미국 FFIEC
	도박 관련 서비스 업종	온라인 갬블링 사업 / 사행시설 운영업	• 미국 FFIEC • 캐나다 FINTRAC

고객위험 - 직업/업종 위험 상세 (2/2)

위험요소	위험명세	설명	Reference
	가상자산 관련 업종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종사자	 미국 FFIEC 영국 JMLSG KoFIU 국제 FATF 금융위원회
자금세탁 의심 직업 및 업종	귀금속 관련 업종	귀금속 판매상	• 미국 FFIEC • 영국 JMLSG • KoFIU • 국제 FATF
	불확실한 소득 원천	전업주부/ 학생 / 무직자	• 의심거래보고사례
고액자산가	고액자산가 여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종합자산가 적용	• KoFIU
가상자산사업자여부	가상자산사업자여부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평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종사자	 미국 FFIEC 영국 JMLSG KoFIU 국제 FATF 금융위원회
정치적 주요인물 WLF PEPs		WLF 결과 동일인으로 승인된 고객	• 미국 FFIEC • 영국 JMLSG • 캐나다 FINTRAC • KoFIU • 국제 FATF

고객 위험에 따른 상세 위험 분류 - 개인

개인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시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각 항목별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요소	위험명세	위험 점수	당연 고위험 여부
그저	• 내국인 (한국 국적자)	25	
국적	• 누락 또는 오류	50	
	• 한국 거주자	25	
거주지	• 외국 거주자 (국내 비거주자)	100	0
	• 누락 또는 오류	50	
종합자산관리	•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 고객 (고액 자산가)	100	0
서비스 고객	• 일반	25	
(고액자산가)	• 누락 또는 오류	50	
직업	• 직업코드 별 국내외 법령 및 업무규정에 따라 위험평가 - 직업 코드 참조	0 ~ 100	직업에 따른 선택적 당연 고위험
	• 누락 또는 오류	50	
	• 그 외: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25	
연령	• 고령자: 만 65세 이상 (통계청)	100	
	• 누락 또는 오류	50	

위험평가 항목 구성

• <u>고객 위험평가 항목 구성 및 위험평가 기준은 **'고객위험평가 모델 정의서'** 참조 하시기</u> <u>바랍니다.</u>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Reference

규정명		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유명 내용 		
한국 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019)	▷ 제31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1.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 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2018)	▷ 제4절 내부통제 ③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금융회사등은 가성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 특히,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취급		
국제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Recommendations (2022)	해외 환거래 서비스(Cross-border correspondent banking services) 자금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연간 보험료가 USD 1,000 미만이거나 1회 보험료가 USD 2,500 미만인 보험 상품 보험 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 보험 연금, 퇴직 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봉급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Reference

규정명		규정 내용	
미국 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 미연방금융회사검사위원 회)	FFIEC BSA Manual (2021)	 온라인 뱅킹(Electronic Banking) 선물접근(Prepaid Access) 제3자에 의한 지불 및 제3자에 대한 지급(Third-Party Payment Processors) 해외 환거래 계좌	
영국 JMLSG (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 : 영국 자금세탁방지기구)	JMLSG Guidance (2020)	• [고위험] 프라이벗 뱅킹 프라이버시 코인 비트코인 텀블링 서비스(tumbling service) • [저위험] 보험료가 낮은 생명보험상품 담보 사용이 불가능하며, 조기해약이 불가능한 퇴직연금상품 고용자의 임금에서 차감하여 연금으로 대체되는, 고용 퇴직연금보험상품 등 :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Reference

규정명		규정 내용	
캐나다 FINTRAC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 캐나다의 금융 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	Guidance on the Risk-Based Approach to Combat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21)	● 전자 자금 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 현금(점포선불카드, 급여카드 등) ● 은행 어음 ● 중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 ● 프라이빗 뱅킹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전자결제 서비스(electronic funds payment services) ● 고객의 신분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 ● 현금자동인출기 (ABMs) ● 대출 (특히 현금당보(cash collateral) 및 양도성예금 당보대출, 보험당보대출) ● 비예금계좌서비스 (예비예금 투자상품 및 보험상품) ● 국제환거래뱅킹서비스(International correspondent banking services) 관련 거래(transaction) 非고객(예중간단계은행역할을 하는 고객)에 대한 사업(Business) 상 지불 현금 및 지급수단(monetary instrument) 또는 기타 서류를 물리적으로 운반하는 서비스 (우편행당서비스 등) ● 은행권(banknote) 관련 서비스 혹은 귀금속 트레이딩 및 유통 ● 해외 환거래계좌 ● 무역 금융 서비스 (신용장) ● 수표 또는 은행어음으로 타행(특히, 해외은행) 고객에게 지불 할 수 있는 계좌 (예: 대리지불계좌(PTA) 등) ● 이민 투자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저위험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저위험 상품 및 서비스 (FIU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 1.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 2. 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상품 및 서비스 위험 - 고위험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 (FIU업무규정 제31조 제3항)

-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 2. 환거래 서비스
- 3.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을 말하며, 상품 및 서비스 종류, 거래 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위험평가는 "신상품 자금세탁위험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위험요소	위험명세	설명	Reference
	다수 이해관계자	다수 이해관계자(거래 당사자를 제외한 제 3자 포함) 관련된 약정이거나 거래 등이 가능한 상품인가? • 공동명의,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조합 등	• 미국 FFIEC • 영국 JMLSG
거래 익명성	대리인(제3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	대리인(제3자)에 의해 실행 가능한 상품인가? • 타인명의 계좌개설 및 거래	미국 FFIEC영국 JMLSG캐나다 FINTRAC호주 AUSTRAC
	제3자 자금 원천 가능성	자산의 원천이 제3자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인가? (제3자 담보의 경우)	• 미국 FFIEC
거래금액 거래량 현금화 신속한 자금이동	대체/현금 거래 등을 통한 거액의 자금이동 가능성	대체/현금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이동이 가능한 상품인가?	• KoFIU • 미국 FFIEC • 영국 JMLSG
계약의 철회/취소	중도 계좌 해지 용이	중도 계좌 해지가 용이한 상품인가 ? • 계좌폐쇄 • 중도계좌해지	• 미국 FFIEC

채널 위험

채널은 회사가 고객과 거래를 위해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채널에는 고객을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채널과 그 외 비대면 채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은 전화, 스마트 폰, 컴퓨터 등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범주	위험요소	위험명세	설명	Reference
채널 위험	거래채널	거래채널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대면, 전화, 모바일/인터넷	• KoFIU • 미국 FFIEC • 영국 JMLSG • 캐나다 FINTRAC • 호주 AUSTRAC

채널 위험에 따른 상세 위험 분류

고객과의 거래 시 사용되는 채널에 의해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위험 요소	위험명세		위험 점수	당연 고위험 여부
비대면 거래	• 비대면 거래	• 모바일, 인터넷	75	
여부	• 누락 또는 오류		50	

거래위험 - Reference (1/3)

	규정명	규정 내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에 관한 업무규정 (2019)	▶ 제77조(비정상적 거래 등) ① 금융회사등은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거래금액이나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회전수가지나치게 큰 경우 3.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한국 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한국 금융정보분석 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2018)	▶ 제3절 의심되는 금융거래의보고 ① (주요 의심거래 유형)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금융회사 등의 고객과 취급업소간 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그 사실을 보고 1.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으나,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2.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3. (분산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4. (외환 거래) 해외 송금 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 장비 등의 수입 실적 또한 전혀없는 금융회사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5. (금융거래 액수) 금융회사등 고객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금융거래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 금융국가래 금액은 금융회사등을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취급업소에 이미 입금한돈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등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함 (예: 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시 500만원으로 산정)

거래위험 - Reference (2/3)

규정명		규정 내용		
한국 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2018)	6. (금융거래 빈도) 금융회사등 고객의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 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 (거래 빈도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 금융회사등을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취금업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7. (분할 금융거래) 금융회사등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8. (금융거래의 주체)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9.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국제 FATF (Financial Action Task	FATF Recommendations (2022)	신용불량자 혹은 신용불량자로의심되는 자의 거래 송금인 및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제3자에 의한 거래 정치적 주요인물(PEP)의 거래 비대면 거래 증권 거래 생명 보험업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Guidance (2021)	• 익명성을 높이는 기술적 특성 - 믹서, 텀블러, 다크코인(AEC) 등 • 지리적 위험 -가상자산(VA) 활동에 대해 취약한 국가 • 거래 패턴 - 신고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등 • 거래 규모 - 거래금액과 빈도에 비즈니스적으로합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 송수신인 프로필 • 자금 원천		

거래위험 - Reference (3/3)

규정명		규정 내용	
미국 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 미연방금융회사검사위원회)	FFIEC BSA Manual (2021)	 혐의거래 자금이 범죄수익인경우 또는 테러자금조달과관련있다는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조기 보험 해약 환급금 취득 후 금융 자산 투자 실행 통화대용증권(Currency Equivalents) 및 현금자산을 통한 보험가입 발생 거래 손익에 대한 분석 없이 보험 해약 또는 조기 상환 거래 제3자에 의한 지불 및 제3자에 대한 지급 간접기부 형태의 보험증권 매입 (국제 보험 관련 자금세탁방지감시 문서,2004.10) 지급수단(Monetary instruments) 공식은행수표, 자기앞수표, 전신환, 여행자수표(T/C) 등을 포함 "지급수단 매매(Purchase and Sale of Monetary Instruments)"에 따르면, 본 금융수단을 이용한 예치 및 은폐(placement and layering)단계에서 범죄자금의 원천을 은닉하기 위해 해당 수단을 통해 자금세탁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JMLSG (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 : 영국 자금세탁방지기구)	JMLSG Guidance (2020)	• 익명 거래(transaction) (현금 거래를 수반할 수 있는) • 비대면 사업관계 또는 비대면거래(transaction) • 알수없는(unknwon)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unassociated) 제3자 지급 • IP 익명화를 이용한 거래 • 스텔스 주소를 사용한 가상자산 거래 • 아토믹 스왑(atomic swap)	
캐나다 FINTRAC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 캐나다의 금융 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	Guidance on the Risk-Based Approach to Combat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21)	• 비대면거래를 통한 계약 (인터넷, 메일, 전화 등을 통한 서비스) • 제3자를 통한 거래 • 가상화폐와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	

거래 및 과거 위험거래이력 위험 등 (기존고객, B모델)

거래 이력이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하여 위험평가 할 때에는 거래 위험과 과거 STR 검출 이력 등을 활용합니다.

범주	위험요소	위험명세	설명	Reference
거래 위험	거래금액	최근 2년간 거래금액	최근 2년간 거래금액 구간	• KoFIU • 미국 FFIEC • 영국 JMLSG • 캐나다 FINTRAC • 호주 AUSTRAC
과거이력 위험	STR Alert 건수	최근 2년 STR Alert 건수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mark>9건</mark> 까지 고위험 <mark>10건</mark> 이상 초고위험	
	STR 보고 건수	최근 2년 STR 보고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mark>1건</mark> 이상 당연 고위험	

거래 및 과거 위험거래이력 위험 등 (기존고객, B모델)

고객 행위에 대한 위험평가를 할 때에는 거래 금액의 규모와 STR 보고서 검출 및 보고 여부를 주로 활용합니다. 고객 위험평가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거래한 금액, STR Alert 및 STR 보고이력으로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 요소	위험명세	위험 점수	위험 등급
	• 0 % ~ 50% 미만	0	저 위험
	• 50% ~ 70% 미만	20	저 위험
거래 금액	• 70% ~ 85% 미만	40	중 위험
	• 855 ~ 95% 미만	60	고 위험
	• 95% 이상 (상위 5%)	100	고 위험
위험 요소	위험명세	위험 점수	위험 등급
STR Alert 건 수	• 0	0	저 위험
	• 1	<mark>20</mark>	저 위험
	• 2	<mark>40</mark>	중 위험
	• 3 ~ 9	<mark>60</mark>	고 위험
	• 10건 이상 발생	<mark>100</mark>	초고 위험
	· 10건 이경 결정	<u> </u>	
STR 보고 건수	• 0	0	